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4.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2장(제5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한시정원

제57조(한시정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법무부에 둔다.

별표 6 중 총계 “772”를 “7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5”를 “7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5”를 “72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10”을 “22,921”로 하고, 일반직 계 “22,891”을 “22,9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685”를 “22,696”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법무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7조 관련)

제57조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5년 4월 1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6급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u>정원</u> 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u>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2장 한시정원</u>
<u><신 설></u>	<u>제57조(한시정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월 1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법무부에 둔다.</u>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72</u>	<u>773</u>	+1
·	·	·	
·	·	·	
일반직 계	<u>735</u>	<u>736</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u>725</u>	<u>726</u>	+1
·	·	·	
·	·	·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910</u>	<u>22,921</u>	+11
일반직 계	<u>22,891</u>	<u>22,902</u>	+1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685</u>	<u>22,696</u>	+1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